

경북지역 투자 생태계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为了搞活庆北地区投资生态系及营销而签署的
慶北地域の投資生態系およびマーケティング活性化のための

업무협약서

业务协议书

業務協約書

한국의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과 D.Lab Ventures, 중국의 Dalian Cybernaut Technology Co., Ltd, 일본의 Vector Group(한국지사)은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 아래 경북지역 투자 생태계 및 마케팅 활성화를 지원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간 발전증진에 공헌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韩国庆北创造经济创新中心与庆一大学创业支援团、大邱大学创业支援团与D.Lab Ventures、中国 Dalian Cybernaut Technology Co. Ltd、日本Vector Group(韩国分公司)在相互尊重、平等互惠原则的基础上，创建支援搞活庆北地区投资生态系及营销的合作关系，以促进相互发展的目的而达成如下协议。

韓国の慶北創造経済革新センターと慶一大学創業支援団、大邱大学創業支援団、D.Lab Ventures、中国のDalian Cybernaut Technology Co. Ltd、日本のVector Group(韓国支社)は、相互尊重と互恵の原則の下で慶北地域の投資生態系およびマーケティング活性化を支援する協力関係を構築して相互の発展の促進に貢献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次のように協約する。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국의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과 D.Lab Ventures, 중국의 Dalian Cybernaut Technology Co., Ltd, 일본의 Vector Group(한국지사)간의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창업기업지원 분야에서 투자유치 및 마케팅을 활성화함으로써 6개 기관의 발전과 경북 지역산업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1条(目的) 本协议书的目的在于，通过创建韩国庆北创造经济创新中心与庆一大学创业支援团、大邱大学创业支援团与D.Lab Ventures、中国 Dalian Cybernaut Technology Co. Ltd、日本Vector Group(韩国分公司)之间的相互合作基础，搞活创业企业支援领域的招商引资及营销活动，为6个机构的发展以及庆北地区产业振兴做出贡献。

第1条（目的） 本協約は、韓国の慶北創造経済革新センターと慶一大学創業支援団、大邱大学創業支援団とD.Lab Ventures、中国のDalian Cybernaut Technology Co. Ltd、日本のVector Group(韓国支社)との間の相互協力

基盤を構築し、創業企業支援分野における投資誘致およびマーケティングを活性化することにより、6つの機関の発展と慶北地域の産業振興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2조(기본원칙) 6개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第2条(基本原则)

6个机构相互合作的过程中，要遵守有关机构的规章制度，在平等互惠基础上维持合作关系。

第2条 (基本原則) 6つの機関は、相互に協力するにあたり、当該機関の諸規定を遵守し、相互互恵的な基盤の上で協力関係を維持する。

제3조(협력분야) 6개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한다.

1. 지역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국내외 엔젤투자자, AC, VC 및 관련기관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3. 기업 정보교류 활성화 및 기술정보 제공
4. 창업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성화 사업
5. 기타 지역 청년창업·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第3条(合作领域)

6个机构为了达成第1条的目的，要以如下各项内容为中心相互合作。

1. 为了培育地区创业企业而进行的搞活招商引资项目
2. 促进国内外天使投资人、AC、VC及相关机构交流项目
3. 搞活企业信息交流及提供技术信息
4. 为了开拓创业企业的销路而进行搞活营销项目
5. 其他地区青年创业、风险产业发展项目

第3条 (協力分野) 6つの機関は、第1条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次の各号の分野を中心に相互に協力する。

1. 地域の創業企業育成のための投資誘致活性化のための事業
2. 国内外のエンジェル投資家、AC、VCおよび関連機関の交流促進のための事業
3. 企業の情報交流の活性化および技術情報の提供
4. 創業企業の販路開拓のためのマーケティング活性化事業
5. その他の地域の青年創業・ベンチャー産業の発展のための事業

제4조(비밀유지) 6개 기관은 상호 공동연구 및 교류를 통해 인지된 제반 기밀사항에 대하여 6개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본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4条(保密)

关于6个机构通过相互共同研究及交流而认知的各种保密事项，未获得6个机

构的同意下，不得向第3方提供或公开。本协议书期满后也将维持保密条款。

第4条（秘密保持） 6つの機関は、相互の共同研究および交流を通じて認知された諸般の機密事項に対し、6つの機関の同意なしに第三者に提供したり、公開しない。本協約書の効力が終了した場合にもまた同様である。

제5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6개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第5条(协议书效力)

本协议书从6个机构代表签字之日起起效，未通过协商而修订或废除之前，仍维持其效力。

第5条（協約の効力） 本協約の効力は6つの機関の代表が署名した日から発生し、合意によって改正されたり廃棄されない限り持続する。

제6조(해지 및 유효기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개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
2.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3.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당해 협약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4. 유효기한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최초 2년으로 하고,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3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第6条(解除及有效期) 发生如下情况时，将解除本协议书。

1. 6个机构达成协议，解除本协议书。
2. 由于任何一个机构违反了协议书内容，其他机构以书面通知废除协议书。
3. 即使解除本协议书，相互合作进行中的事项在协议内容结束之前仍有效。
4. 有效期从签署协议之日起最少为2年，未在3个月前以书面形式通知时，以1年为单位自动延长有效期。

第6条（解約と有効期限） 本協約が解約される場合は、次の各号のとおりである。

1. 6つの機関が条約の解約に合意した場合
2. いずれかの機関の協約違反により、他の機関が協約の廃棄を書面で通知した場合
3. 本協約が解約された場合でも、相互協力が進行中の事項は当該協約が完了するまで有効である。
4. 有効期限は協約締結から最初の2年とし、解約の意思を書面で3ヶ月前に事前に通知しない限り、1年単位で自動延長するものとする。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약 체결 후 6개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第7条(继承权利·义务)

签署本协议书后，如发生更换6个机构的名称、代表人等主要变动事项时，在相互协商的基础上，将总括继承本协议书的权利和义务。

第7条（権利・義務の承継） 本協約締結後に6つの機関の名称、代表者の変更など重要な変更事項が発生した場合、相互の合意により、本協約に基づく権利と義務を包括承継する。

제8조(협약 변경) 본 협약서의 내용은 6개 기관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협약의 변경은 6개 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하며, 변경의 효력은 그 서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기명날인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第8条(修改协议)

本协议书的内容在6个机构相互协商的基础上可进行修改。但是，修改协议要以6个机构代表签字盖章的资料为基础，未在该资料上给出关于修改内容的生效日期时，从签字盖章之日起起效。

第8条（条約の変更） 本協約書の内容は、6つの機関の相互の合意によって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協約の変更は6つの機関の代表が記名捺印した書類によるものであり、変更の効力は、その書類で別に整合がない限り、記名捺印した日に効力を生ずる。

제9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이의가 발생한 경우나 조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 또는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6개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第9条(协议书的解释)

履行本协议书的过程中，如发生异义或对条款的解释互不相同或履行本协议书未涉及的内容的情况时，以相互诚信为基础，6个机构协商决定。

第9条（条約の解釈） 本協約の履行において異議が発生した場合や条文の解釈が互いに異なる場合、または本協約書に明示されていない事項を履行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相互信義に基づいて、6つの機関が協議して決定する。

한국의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과 D.Lab Ventures, 중국의 Cybernaut, 일본의 Vector Group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협약서 6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韩国庆北创造经济创新中心与庆一大学创业支援团、大邱大学创业支援团与D.Lab Ventures、中国Cybernaut、日本Vector Group确认本协议书已成功签署，为了证明协议内容，本协议书共制订1式6份，签字盖章后，各持1份。

韓国の慶北創造経済革新センターと慶一大学創業支援団、大邱大学創業支援団とD.Lab Ventures、中国のCybernaut、日本のVector Groupは、本協約が円満に締結されたことを確認し、これを立証するために、本協約書6部を作成してそれぞれ署名捺印した後、1部ずつ保管する。

2018年 11月 15日



단장 권 순재

김우규

단장 강형구

강형구

센터장 김진한

김진한



대표이사 조운희

조운희



대표 辛培軍

辛培軍



한국대표 권의주

권의주